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과 「공소청법」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에 따라 기관명 변경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벌과금 등 조정 후 재판서에 날인하는 기존 확인 절차를 소속 과장의 「확인」으로 개정하여, 종이문서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 송달된 재판서에 대한 전자적 확인 절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공소청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산형 등의 집행불능 시 “소재수사 결과 보고서”를 “소재확인 결과 보고서”로 개정하고, 벌과금 집행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및 검찰의 직접 압류 또는 압류를 위한 수색 등이 가능해진 점을 고려하여, 실무상 활용되지 않는 “자력조사 촉탁” 관련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규정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제명 및 기관 명칭·용어 정비(제명, 제1조, 제6조제5항, 제8조 제3항·제4항,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1조의3 제2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제3항, 제33조제6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와 이에 따른 서식 정비
- 나. 제1조의 직무 근거법령을 「검찰청법」에서 「공소청법」으로 개정

- 다. 제6조제4항 벌과금 등 조정 후 재판서에 날인하는 기존 확인 절차를
소속 과장의 「확인」 으로 개정
- 라. 제43조 자력조사 촉탁규정 삭제 및 관련 별표 서식59·60 삭제
- 마. 제46조 「소재수사 결과 보고서」를 「소재확인 결과 보고서」로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 ~ 9.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 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11조”를 “「공소청법」 제58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재판서 원본의 사건번호란과 피고인란 오른쪽 여백에 재판확정 및 벌과금 조정 확인인을 찍고, 징제번호를 적은 후 주무과장”을 “소속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3조의2 중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제13조의4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청의 검사장”을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33조제6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본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5조 본문 중 “주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소재수사결과보고서”를 “소재확인 결과보고서”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검찰청의 장”을 “공소청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지청의 장은 제외한다”를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은 제외한다)”을 “공소청의 장”으로 하고, “상급 검찰청”을 “상급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중 “검찰”을 각각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중 “검찰”을 각각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각각 “공소

청”으로,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및 별지 제6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재산형등에 관한</u> <u>검찰집행사무규칙</u>	<u>재산형등에 관한</u> <u>공소청집행사무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u>검찰청법</u> 」 제11조에 따라 벌금·과료·추징·과태료·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공소청법</u> 」 제58조----- ----- -----.
제6조(벌과금등의 조정) ① ~ ③ (생략)	제6조(벌과금등의 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u>재판서 원본의 사건번호란과 피고인란 오른쪽 여백에 재판확정 및 벌과금 조정 확인인을 찍고, 징제번호를 적은 후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u>	④ ----- ----- -- <u>소속 과장</u> -----.
⑤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확정된 벌과금등은 각각 그에 대응하는 <u>검찰청</u> 에서 조정하며, 원심청(原審廳: 원심기관)의 가납(假納: 임시납부) 또는 제33조의2에 따른 보관 여부를 확인한	⑤ ----- ----- ---- <u>공소청</u> ----- ----- ----- -----

후 즉시 원심청에 집행을 촉탁
해야 한다. 다만, 「비송사건절
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제1심 대응 검찰청에서 조정해
야 한다.

⑥ (생 략)

제8조(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
등원표 관리) ①·② (생 략)

③ 2명 이상의 납부의무자에 관
하여 공동으로 벌과금등을 집행
하는 재판이 심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
우에는 확정된 납부의무자에 관
한 벌과금등은 그 중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조정하여
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상급심에 대응
하는 검찰청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하
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재산
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재산형등 재
판확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
야 한다.

제13조의2(보호관찰명령 등의 집

-----.

----- 공소청-----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
등원표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소청-----
-----.

④ -----
--- 공소청-----

----- 공소청-----

-----.

제13조의2(보호관찰명령 등의 집

행) 재산형에 부가된 보호관찰 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의 절차는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제13조의4(벌금형의 집행유예 실효 등 통보) ① (생략)

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벌금형 집행유예 실효·취소통보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5조(현금의 수납절차) ①·② (생략)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 출납 공무원에게 인계하기 어렵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로부터 직

행) -----

----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 집행사무규칙」-----
-----.

제13조의4(벌금형의 집행유예 실효 등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소청-----

--- 공소청-----
-----.

제15조(현금의 수납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접 별과금등을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납원표, 수납영수증 및 수납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작성한 후 수납영수증의 “검찰청 수입금 출납공무원” 하단부에 서명날인하여 즉석에서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수납원표, 수납보고서 및 별과금등을 지체 없이 수입금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수납 후의 절차) ①·②
(생략)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일 별지 제19호서식의 별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일계표)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지명수배의 해제) ①
(생략)

② 검사는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 발생 등 일시적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중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벌금 또

공소청

제16조(수납 후의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공소청 _____

_____.

제21조의3(지명수배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소

청

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해제할 수 있다.

제22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
의 납부) ①·② (생 략)

③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이하
이 조에서 “원 검찰청”이라 한
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구치
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
에는 유치 중인 구치소 또는 교
도소 소재지 관할 검찰청에 벌
금 또는 과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원 검찰청의 검
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하며, 원 검찰청 검사
는 즉시 벌과금등 집행 및 석방
지휘를 촉탁하여야 하고, 수탁
청의 검사는 벌과금등을 조정한
후 즉시 석방 지휘를 하여야 한
다.

④·⑤ (생 략)

제26조(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
회) ①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
지처분 또는 그 취소 결정과 제

-----.

제22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
의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소청-----

----- 공소청-----

----- 공소청 -----

-----.

----- 공소청-----

----- 공소청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
회) ① -----

찰청이나 판결문상 주거지 등의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집
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다른 종류의
형이나 무죄·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공소기각
등으로 변경되어 선고되었을 때
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
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4
8호서식의 가납재판 변경통지
서에 따라 그 선고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확정되었으
나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벌과금등의 집행촉탁
을 하지 아니하고 상급심 대응
검찰청에서 완결 처리한 경우에
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
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49호
서식의 가납재판 완결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가납금의 환급) ① ~ ⑤

소청-----
-- ---- 공소청-----
-----.

② -----

----- 공
소청-----
- 공소청-----

-----.

③ -----

----- 공소청--

공소청-----
----- 공소
청-----
공소청-----

-----.

제33조(가납금의 환급) ① ~ ⑤

(생 략)

⑥ 가납금을 환급받을 자가 각 급 검찰청 홈페이지상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환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9조(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①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납부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현재지·주거지 또는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54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서에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과 벌과금등원표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다만, 벌과금등에 대한 촉탁사항을 전산 입력하였을 때에는 벌과금등원표 및 관계 자료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40조(벌과금등 집행의 수탁)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지체

(현행과 같음)

⑥ -----
-- 공소청 -----

-----.

제39조(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①

-----공소청-----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벌과금등 집행의 수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없이 별지 제57호서식의 별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통지서를 별과
금등의 집행을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만, 촉탁청에서 별과금등 집행
촉탁의 수리 여부를 전산망 등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별과
금등 집행의 촉탁) 검사는 사법
경찰관리에게 별지 제59호서식
의 별과금등 납부(독촉)촉탁서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자력조사
촉탁서에 따라 별과금등의 집행
을 촉탁할 수 있다.

제45조(관계 서류의 정리) 재산형
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재산
형등의 집행을 위하여 작성된
서류는 별도 보관하되, 그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형등 집행이 끝난 경
우에는 수납보고서 또는 노역장
유치 종료 보고서를 별도 보관
하되, 그 밖의 서류는 정해진 절
차를 거쳐 폐기 처리하고, 재산
형등의 집행불능의 경우에는 별

----- 공소청-----
-----.

-----.

<삭 제>

제45조(관계 서류의 정리) -----

----- 주요
내용-----.

과금등원표를 전산출력하여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 및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 의결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와 소재수사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전부를 벌과금등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벌과금등에 관한 통계보고)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월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월보)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연보)를 작성하여 다음 사무연도의 1월 7일까지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소속 지청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월보 및 연보)를 전산출력·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의

----- 소재확인 결과보고서 -----

제47조(벌과금등에 관한 통계보고) ① -----

----- 공소청 -----

----- 공소청 -----

----- 지방공소청 -----

----- 공소청의 장 -----

② ----- 공소청 -----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월보)를 다음 달 10일까지,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연보)를 다음 사무연도의 1월 15일까지 각각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감사) ①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은 제외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검찰청의 벌과금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48조(감사) ① 각급 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공소청-----

-----.

② --- 공소청의 장-----

----- 상급 공소청-----
-----.